

의안번호	제 726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1년 5월 31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26
----------	-----

제출연월일 : 2021년 5월 3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신규 지급대상지역을 추가하고
-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 기구 폐지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충주지청 가산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추가(별표1)
-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충주지청 가산규정 삭제(별표2)

### 3. 의안전문 : 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충청북도 조례 제 호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등급(제2조 관련)

구분	시·군별	지역 및 등급			
		특 지	갑 지	을 지	병 지
벽지 지역	제천시			백운면 덕동리	한수면 송계리
	보은군				산외면 원평리
	옥천군				청산면 신매리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	용화면 조동리 상촌면 궁촌리	상촌면 하도대리
	증평군				증평읍 율리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별표 2]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구 분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		
	3급	4급	5급 이하
월 지급액	600,000원	500,000원	400,000원

※ ~~충주지청 근무자의 경우 월 200,000원 가산 지급 <삭제>~~

## 관련법령 발취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등급구분에 따라 특지는 월 6만원, 갑지는 월 5만원, 을지는 월 4만원, 병지는 월 3만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 5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0]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당해 기관의 특수성 및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별표 10]의 등급구분기준표의 적용요령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③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또는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다.

④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9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10. 경제자유구역청업무수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행정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1) 지급액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비고: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0]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제12조제2항관련)

1. 벽지지역

등급구분요소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지역등급별 배점기준
가. 당해 기관에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까지의 거리	20km 이상 30km 미만	30km 이상 40km 미만	40km 이상 50km 미만	50km 이상 60km 미만	60km 이상	●특지 : 39점 이상 ●갑지 : 31점 이상
나. 당해 기관에서 가장 가까운 역·시외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4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12km 미만	12km 이상 16km 미만	16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38점 이하 ●을지 : 23점 이상 30점 이하
다. 당해 기관과 나호의 역 또는 시외버스 정류장 사이의 1일 대중교통 운행횟수(시내버스 등의 상·하행 운행횟수의 합)	17회 이상 20회 이하	13회 이상 16회 이하	9회 이상 12회 이하	5회 이상 8회 이하	4회 이하	●병지 : 15점 이상 22점 이하

라. 당해 동 또는 리의 도로 면적 비율	1.5% 이상 2% 미만	1.0% 이상 1.5% 미만	0.5% 이상 1% 미만	0.5% 미만	
마. 당해 동 또는 리의 산지면적 비율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바. 당해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병·의원까지의 거리	20km 이상 30km 미만	30km 이상 40km 미만	40km 이상 50km 미만	50km 이상 60km 미만	60km 이상
사. 당해 기관으로부터 일용품(접화·식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슈퍼마켓(소규모 가게·상점 포함)까지의 거리	1km 이상 2km 미만	2km 이상 4km 미만	4km 이상 6km 미만	6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아. 당해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이·미용시설 또는 대중목욕탕까지의 거리	4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12km 미만	12km 이상 16km 미만	16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자. 당해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금융기관까지의 거리	4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12km 미만	12km 이상 16km 미만	16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차. 당해 동 또는 리의 상주 인구수	200인 이상 300인 미만	100인 이상 200인 미만	50인 이상 100인 미만	50인 미만	
카. 당해 동 또는 리의 차량 보급률	30% 이상 40% 미만	20% 이상 30% 미만	10% 이상 20% 미만	10% 미만	
타. 당해 기관의 직원수	5인 이상 10인 이하	3인 이상 4인 이하	2인	1인	
파. 당해 기관으로부터 8km 이내에 학교가 있는지의 여부	중학교 및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의 분교가 있는 경우	학 교 가 없는 경 우	

비 고

1. 탄광지역(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폐광지역을 포함한다)은 최소한 병지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폐광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법률의 적용시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2. 같은 동 또는 리에 소재하는 기관은 동일한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1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27조의2(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① 시·도지사는 제27조·제30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의 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임명한다.
- ③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이하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임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 상호 간에 지방세 및 수수료·사용료의 부과·징수, 민원서류의 발급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국가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 ⑥ 경제자유구역청에는 「지방자치법」과 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정원을 둘 수 있다.